# 『KB부가세납부전용통장』특약

# 제 1 조 약관의 적용

KB 부가세납부전용통장(이하 "이 통장"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.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

### 제2조 예금과목

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보통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.

# 제 3 조 가입대상

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(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)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 입니다.

- 1.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형태·순도 등을 갖춘 지금
- 2.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형태·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
- 3.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
- 4. 「관세법」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
- 5.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이상인 물품
- 6. 「관세법」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,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

### 제 4 조 가입용도

이 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9에 따라 사업자간 금 관련 제품 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입니다.

# 제 5 조 적용이율

이 통장의 이율은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한 보통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의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.

# 제 6 조 예금의 신규

이 통장을 가입하는 사업자는 거래물품 종류별(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)로 하나의 금융회사를 지정하여 거래하여야 하며, 지정 금융회사 내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신규 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 7 조 거래 이용매체

매매대금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 이 통장 개설 후 아래의 이용매체를 사용하여 매매대금을 결제합니다. 이용매체의 종류는 사업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향후 변경 또는 추가 될 수 있습니다.

- 1. 영업점 창구
- 2. KB기업인터넷뱅킹
- 3. KB기업뱅킹앱

# 제 8 조 예금의 전환

고객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 보유 KB국민은행 기업자유예금 또는 보통예금에서 KB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

- 1. 영업점 창구 서면 요청
- 2. KB기업인터넷뱅킹에서 전환 신청
- 3. KB기업뱅킹앱에서 전환 신청

### 제 9 조 간이과세자의 신규

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고객은 간이과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영업점 창구에 제출하고 영업점 창구에서 전환 또는 신규 시에만 별도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.

# 제 10 조 매매 대금의 흐름

- ① 매입자는 관련 제품 매매 시 본인의 KB부가세납부전용통장으로 매매에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하며 제7조의 이용매체를 통한 결제 시 매입자의 KB부가세납부전용통장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출금되어 공급가액은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입금되고,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자 거래은행의 '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정'으로 입금됩니다.
- ②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해당 사업자에게 정산·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동 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KB부가세납부전용통장으로 입금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6.08.11 부터 시행합니다.

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